

2021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공모 신청 안내

I. 공모안내	3
II.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안내	8
III. 공모 세부사항	9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우리 재단은 “고객의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에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부당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화연결 종료, 출입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전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재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 공모안내

1. 공모일정

- 공고기간 : 2021. 6. 29.(화) ~ 7. 13. (화)
- 접수기간 : 2021. 7. 5. (월) ~ 7. 13. (화) (18시 접수마감)
- 사업기간 : 2021. 7월말 ~ 2021. 12. 31.

2. 지원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 민간 문화예술공간 또는 예술단체

(※사업기간 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건축허가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공간 (단, 갤러리 카페, 독립서점, 대관 전용 시설 등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민간 문화예술공간 제외)

3. 지원신청 부적격자

(1) 지원신청 개인(단체)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 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이들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대학원생 가능)
- ※ 단, 대학(교)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 지원 가능(졸업예정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 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4.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및 부적격시 처리 방법

(1)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 수행 인원 중 50% 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2)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시, 서귀포시 직접 지원 사업
-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시 처리 방법

- 심의위원회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의결 후 지원 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5. 지원사업 예산편성 안내

- (1)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함
 - ※ 단, 사업 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2) 교부 신청 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음
- (3) 선정된 신청인·단체가 사업수행 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규모 및 내용을 대폭 변경할 수 없음
 - ※ 공연·행사횟수·전시일수, 지휘자·연출가·극작가·안무가 등 주요 출연진·제작진 사업장소 등

이 크게 변경될 경우 지원금 추소, 삭감 등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
한 경우는 예외로 함

- (4) 교부 신청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례비(출연료, 원고료, 창작활동비 등) 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용

세목	항목	세부 내용
일반수용비	사례비	출연, 기획, 연출, 평론 등 개인 사례비
	원천세	원천세,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자 부담 0.8% 한)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등
	기타운영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운송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 프로젝트 기획~실행 단계 기간 내 장소 대관료 지원
	임차료	장비, 물품, SW(소프트웨어) 등의 임차료, 사업기간 내 웹호스팅 비용 ※ 사업기간 외 장비, SW 임차 시, 비용 불인정
사용불가 항목		세부 내용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전화설비 등
사업진행 준비비용		회의비(다과 및 식대), 간담회 등 식대 경비(주류 등) 및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각종 수수료 (인증서발급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6. 심의배제사항

- (1)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2) 신청제한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3)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4)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 (5)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유형 잘못 선택)
- (6)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유형의 지원신청서 및 전년도 신청서 제출)
- (7) 지원신청서의 주최,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자(단체)가 주체가 아닌 경우
(대규모 행사의 부속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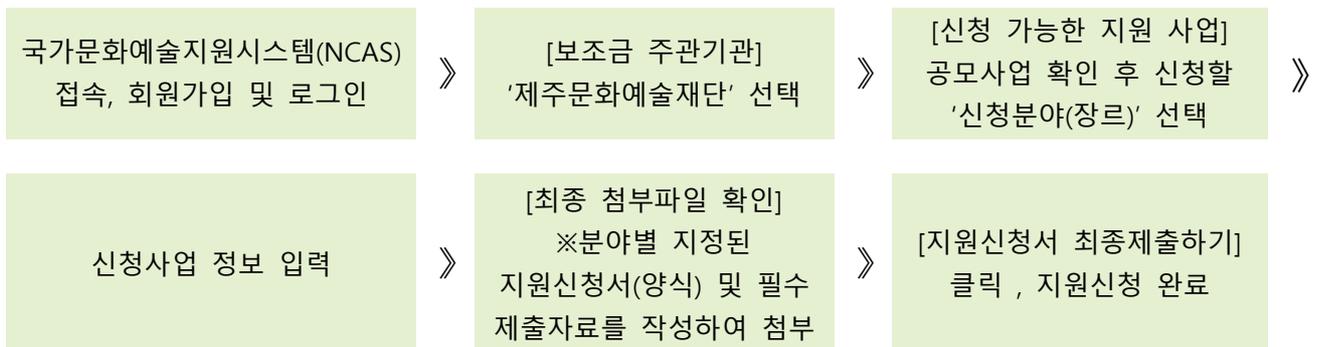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1)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모내용(신청자격, 대상사업,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을 확인 후 지원신청 바랍니다.
- (2)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3) 지원신청자 활동실적 증빙서류가 지원신청시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4) 지원신청서, 필수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때 심의 배제됩니다. 제출 전 심의배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한 신청인 · 단체는 동일 사업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여러 유형에 복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복수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원결정 후 심의위원회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때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6)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원신청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7)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심의배제사항, 감점이 적용되는 사항 등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방법

-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외의 전자 우편,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단체 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접수시 심의배제)
 - 단체 지원 신청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개인·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 사항 등)
 - 2021년도 지원신청부터 심의, 교부, 정산의 전체 과정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수행합니다.



2. 사용시 유의사항

- (1) 지원 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지원시스템 신청 시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 단, 제출된 지원신청서 중 첨부한 이미지가 손상된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요청 할 수 있음 (재단 담당자 요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제출 한)
- (3)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명 :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무지개 프로젝트”

2. 세부사항

<p>신청 자격</p>	<p>제주도내 민간 문화예술공간 ※ 사업기간 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건축허가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공간 ※ 갤러리 카페, 독립서점, 대관 전용 시설 등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문화예술공간 제외</p> <p>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기초 예술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증빙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제출</p>
<p>지원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술치유 프로젝트 운영 예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도민 참여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최소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필수 이행사항) - 예술치유 페스티벌 주간 프로그램 운영 (*필수 이행사항) ▪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장소 임차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연구-실행 기간 동안의 민간 문화예술 공간 장소 임차료 지원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장비 임차료, 물품 재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방역물품 장비 임차료, 재료비 등 지원
<p>지원 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1,000만원~ 최대 2,000만 원 이내 (7팀~10팀 이내 지원)
<p>지원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0,000천원
<p>지원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치유프로젝트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재료비, 홍보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 편성 ※ 공간 운영 대표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거 개인 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 단체인 경우 지급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소 임차료(공간 대관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실행 기간 동안의 장소 임차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운영 대표자 소유의 공간일 경우 장소 임차료 편성 불가 ▪ 방역 장비 임차료, 물품 재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장비 임차료, 방역 물품 재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의 5% 이내 편성

		세부내용
제출 자료	필수	<p>가.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p> <p>1) 예술치유 프로젝트 운영 계획</p> <p>2) 예술치유 프로젝트 기획자 이력사항</p> <p>3) 공간(또는 단체) 최근 3년 간(2018~2020년) 예술치유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실적</p> <p>나.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p> <p>- 공간 소개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관련</p> <p>다. 공간(또는 단체)의 성격, 개관연도,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p> <p>-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p> <p>라. 시설 임차·소유 사실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p> <p>-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p> <p>마. 합법건축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p> <p>- 건축물 대장 등</p>
	선택	<p>가.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대관승인서, 리뷰 스캔본, 프로그램북 스캔본, 언론 보도실적 등)</p> <p>※ URL링크를 제출하는 경우 서류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p>
		<p>※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p> <p>※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경상 경비는 지원 불가</p>
공통 유의 사항	<p>-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신청 시 개인, 단체명이 아닌 해당 “공간명”으로 접수</p> <p>-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p> <p>-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p> <p>-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p> <p>- 필수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p>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심의	>	4차 토론 심의
	필수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검토		PT 발표를 통한 공개 인터뷰 심의		전문가 집체토론
	필수 제출서류 (지정된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를 산술함)		사업내용 PT발표 및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 부적격자 확인 후 조치 및 지원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 검토/ 지원금 의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사업 적합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독창성 및 충실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기획력이 있는가? · 프로젝트가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는 신청 사업을 수행할 전문적 역량이 있는가? · 사업 참여 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단체, 공간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치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63169 제주시 중앙로14길 21

제주문화예술재단 공간기획팀 (공모 문의)

문의) Tel. 064.800.933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www.ncas.or.kr) (시스템 문의)

문의) 1577-8751